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호외 2021. 7. 1.(목)

www.jeonbuk.go.kr

**훈 령**

○ 전라북도 훈령 제1782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 1

회람									
----	--	--	--	--	--	--	--	--	--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전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1일

전라북도 훈령 제1782호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의 승진, 보직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와 행정의 능률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승진, 보직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공개) 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전라북도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2. 정기인사계획 및 수시인사계획
3. 승진·전보 임용기준 등
4. 직위 및 부서공모제의 대상직위 및 대상부서
5. 다면평가제 적용대상 범위
6. 그 밖에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4조(평등의 원칙) ① 인사운영에 불합리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② 보직부여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양성이 동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

##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설치) 인사위원회의 설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

제6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의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인사의 사전의결
3.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은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회의는 정례화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인사운영 활성화 및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기밀유지) ① 위원은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외의 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내용(회의록 포함)은 위원들의 소신있는 위원회 활동과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출석·의견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비공개로 한다.

## 제3장 승진 및 인사교류

제9조(승진심의) ① 지방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및 직무수행능력을 기초로 한다.

제10조(심사승진임용) ① 도 및 시·군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별로 승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의 3·4급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업무수행능력, 지도력, 통솔력, 현직급 승진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임용 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임용권자가 승진임용 배수 내에서 승진후보자명부서열, 조직기여도, 현직급 승진년도,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③ 도의 팀장급 공무원을 지방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시·군으로 진출시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에 따라 영 제30조제1항 별표 4에 따른 법정배수 이내의 사람 중에서 선발·전출하여야 한다.

④ 도의 6급 공무원을 승진을 전제하여 자체적으로 전보 시킬 경우와 도의 6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을 전제로 시·군으로 진출시킬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인사교류원칙) ①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는 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1:1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도 및 시·군의 승진임용은 자치단체별 결원기관에서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기관 간 승진기회의 균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자치단체 상호 간 인사교류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시·군에서 도로 전입한 6급 이하 공무원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에 필요한 경우 본청에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 ① 시·군 부단체장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해 부단체장 교류자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 2급 또는 3급 부단체장: 도 3급 공무원 이상 및 당해 직급 1년 이상
- 2. 4급 부단체장: 도 4급 공무원 중 당해 직급 3년(직무대리기간 포함)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류자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인력자원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당해 직급에서의 부단체장 경력자
-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인사교류자 등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류지원비를 직급보조비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역이 도내이거나 근무기관에서 숙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1. 서울: 월 1,000,000원

2. 그 밖의 지역: 월 800,000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거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관에서 숙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제1항 이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도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 중인 도 소속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 등과 인사교류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 중인 도 소속 공무원
3. 도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도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장 보직관리기준

제14조(보직의 원칙) 도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순환전보) ① 도 소속 공무원의 전보는 영 제27조제1항을 따른다.

② 행정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장기간 근무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전보시켜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기술직, 도시계획 및 그 밖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5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경로 등) 5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의 보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도의 2급 공무원: 도의 3급 국장급에서 임용
2. 도의 국장급: 시·군 부단체장 또는 도의 과장급에서 임용
3. 도의 과장급: 도의 팀장급, 시의 국장 및 그 밖의 유사한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부득이한 경우 4급 부시장·부군수 중에서도 임용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은 직급·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
5. 기술직 5급 이상은 보직순환, 승진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7급 이하 승진자의 보직경로) 7급 이하 도 본청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인사여건을 고려하여 전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현안부서 직위공모제) ① 도정의 역점시책인 신성장동력산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체계 확립을 위하여 별표의 현안부서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정현안의 추진시기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모절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신청을 받고 실적가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임용할 수 있다.

③ 현안부서에 직위공모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성과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성과가 있을 시 우선적으로 발탁할 수 있다.

④ 공모 대상직위에 대해 공모할 때에는 해당 직위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무경력, 전문교육이수, 전공분야학위, 관련 자격소지 여부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19조(장애인 공무원의 보직) 장애인 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및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 제5장 결원충원

제20조(5급 공무원) ① 도의 팀장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도의 6급 공무원 중에 승진·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군 지방5급 공무원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되, 이 경우 도에서 전출한 공무원 등을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21조(6급 공무원) ① 도의 6급 공무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도의 하위직급 공무원 중에 승진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치단체 간 협의에 의하여 6급 공무원을 도에 전입시킬 경우에는 1:1 교류 인사에 따른다.

제22조(7급 이하 공무원) ① 7급 이하 공무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도의 하위직급 공무원 중에 승진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전입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입방법은 원칙적으로 시험 50%, 추천 50%로 하되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전입할 7급 이하 공무원의 전입은 당해 직급 5년 미만인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는 공무원은 추천 당시 시·

군 본청(사업소 포함)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1. 도에서 시행하는 전입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소양고사 도내 성적이 3위 이내인 사람
3. 청백봉사상·참봉사대상 수상자
4. 시책사업 또는 근무실적이 현저하게 우수하여 훈장·포상을 수상한 사람
5. 도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 본청 또는 사업소 그 밖의 관서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도정 업무수행을 위해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3조(전입결격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말소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 전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6장 전입시험 등

제24조(전입시험의 실시) 도지사는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입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입시험을 실시한다.

제25조(전입시험대상자 추천) 지방자치단체장은 도 전입시험 대상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천한다.

1. 도에서 승진 전출된 사람
2. 인재개발원 초급간부양성반 이수자
3. 제2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국무총리 이상 포상 수상자
5. 7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26조(전입시험 관장 및 실시) ① 도 전입시험은 공무원채용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전입시험은 직렬별·직급별 전입예상인원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군 여성공무원의 도 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전입시험 실시결과 성적 우수자 순서로 전입후보자를 결정하고 결원 시 순위에 따라 2년 이내에 우선 전입 발령한다. 다만, 전입후보자 중 승진을 했거나(강임 전입은 가능함) 본인이 도 전입을 포기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전입시험의 방법 및 합격자 결정) ① 도 전입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다.

- ②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 ③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 과목별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이내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면접시험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 ④ 면접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한다.
- ⑤ 필기시험은 전 직렬 동일하게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직 외 직렬은 행정법 과목을 제외한다.
  1. 객관식: 행정법, 행정실무
  2. 주관식: 논술

제28조(소양고사) 소양고사는 인사업무담당 과장이 실시한다.

### 제7장 고충처리

- 제29조(고충처리의 활성화) ① 공무원의 고충처리는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② 도지사는 법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의 승진, 보직 등 인사에 관한 고충심사 및 처리를 위해 사이버 대화방 운영 등 공무원의 고충처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장 보칙

제30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승진, 전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종전의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훈령에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사교류자의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인사교류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별표]

현안부서 지정(제18조 관련)

연번	소 속	직 위 명	비 고
1	농축수산물식품국 농업정책과	삼락농정팀장	
2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도탈관광팀장	
3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관	일자리취업지원팀장	
4	일자리경제국 투자금융과	기업유치팀장	
5	혁신성장산업국 탄소바이오산업과	탄소정책팀장	

[별지]

직 위 공 모 직 위 추 천 서 (제18조 관련)  
( 현 안 부 서 )

1. 대상직위

소 속	직 위	담당 소속 공무원 수	비 고

2. 추천사유

- 업무의 중요도
- 업무량
- 도정에 미치는 영향
- 기 타

위와 같이 직위공모 대상 직위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실국장                    (인)

# 도보이용안내

## 도보 이용 안내

- ☞ 도보는 매주 금요일자로 발행됩니다.
- ☞ 도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도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도보는 <http://www.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 접속
  - 인기검색어 → 전북도보
  - 자치법규 → 전북도보
  - 도정정보 → 도정자료 → 전북도보

## 도보게재 의뢰 안내

- ☞ 근거법규 : 전북도보발행규정 제11조 및 도보게재위탁계약서 제3조
- ☞ 원고 접수 마감 : 매주 화요일
- ☞ 도보게재 의뢰 방법
  1.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 문서사송 혹은 FAX(063-280-2299)  
⇒ 개별법령별 도보게재 근거 법규를 명시
    - 예시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조제○항근거
  2. 게재문안(공문 첨부물) 1부
    - 도청 실, 과, 사업소, 시·군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송부하시고
    - 기타 도보위탁게재 계약기관은 USB메모리로 제출하거나  
E-mail([jbdobo@korea.kr](mailto:jbdobo@korea.kr))로 보내주셔야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